

‘透明한 會計基準’에 關한 小考

李 天 构

훌륭한 회계제도란 독자적으로는 존립할 수 없는 것이며 훌륭한 기업지배구조를 가져오는 다른 요소들과 함께 병립하게 될 때 얻어지고 그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는 1997년 IMF사태 이후 이를 바 ‘國際會計基準’에 맞는 회계기준을 마련하려는 데 매달려 왔다. 논란의 여지없이 누구에게나 자명한 회계수치란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회계자료에 근본적 한계성이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주목하지 않은 채, 그 이전에 결정된 외부의 기준을 차용해 우리 기준을 보강하려는 과업에 매달려 왔다. 앞으로는 ‘會計資料를 通한 透明性確保’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최선의 진실파악을 위해 그것을 여러 다른 자료와 함께 활용해야 하되, 관계전문가의 주관적 판단에도 상당한 정도 의존 할 수밖에 없다는 당연한 사정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럴진대 명분으로는 어정쩡한 국제기준에 합치하는 회계기준 또는 그러하면서 동시에 우리 문화를 반영하는 회계기준을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현재 그러한 것은 마련하는 중이라고 자위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이러한 양상은 현재 완성하기 어려운 큰 그림을 완성하려는 꿈을 내포하는 것이나 실제로는 미국과 영국 사이의 논쟁을 보며 몇 가지 정도를 감안하는 타협안으로 종착될 가능성이 크다. 그것은 본질상 불완전한 것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요, 그것에 대응하게끔 기왕의 内部統制制度 및 外部監査制度로 다소 보완되는 것으로 될 것이니, 이를 미리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1. 存在하지 않는 글로벌 會計基準

우리가 IMF사태를 맞게 된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당시 우리 會計制度가 투명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제도였던 데 기인한다고 진단되었다. 회계수치란 모름지기 진실을 표시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 기업들에 대한 회계자료는 그러하지 못했고 그로써 그것이 내부에서는 잘 못된 경영판단을 초래할 수 있었던 일방 외부로부터는 신뢰를 받지 못하였다고 여겨졌다.

이에 2005년부터 EU가 채택하기로 한 IAS(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또는 미국식 會計標準을 글로벌 표준의 후보로서 인지하고 그것과 상응하게끔 우리의 회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주관적 인식과 달리 객관적 실상은 회계분야에서 어떤 하나의 확정된 국제기준이란 것은 당시 존재하지 않았고 현재에도 존

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각국은 나름대로 자국의 금융제도 및 문화적 전통을 상당히 반영하며 지녀 온 특유의 로컬 모델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어떤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여 근자에 OECD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정도이고 EU에서는 IAS가 채택된 정도이다. 게다가 이런 논의에서는 그런 것에서의 논의의 중요내용과 미국기준에 상응하는 것이 다소 다른 것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 둘 사이의 차이를 어떻게 소화하고 처리해야 할지가 핵심적 쟁점이 되고 있다. 아무튼 그러한 논의의 결과로 가까운 시일 내에 허락 없는 기준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식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현재 글로벌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완전한 국제회계기준이 없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러한 차이의 초점으로서 EU와 미국 기준 사이의 차이는 어떻게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리라 보인다. 2003년 말 시점의 상황을 보더라도 미국의 회계표준을 정립하려는 聯邦會計標準委員會(FASB: Federal Accounting Standard Board)과 유럽의 회계표준을 강구하는 國際會計標準委員會(IASB: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Board) 사이에서는 후자가 전자의 내용을 크게 수용하면서 의견의 접근을 이루어 가려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측의 기업체가 그런 接近案에 특히 반대를 하고 있어 가까운 시일 내에 단일 표준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The Economist*(2003)]. 한편 그러한 차이가 해소되지 않은 과도기 중에는 어떤 하나의 확실한 국제기준이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 우리가 의심없이 수용할 수 있는 국제기준이란 회계부문에서는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고 그로써 국제적 기준을 기계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일은 원천으로부터 불가능하고 의미 없는 일이라 할 수 있다. 회계제도에 관한 한 글로벌 표준은 없다고 할 수 있다.

OECD논의에서 기본이 되는 것은 대륙식 회계기준으로서 미국식 회계기준과는 다른 것이다. 그것은 기업경영을 위한 자금을 주로 간접금융시장에서 차입하여 마련해 온 배경을 가진 대륙의 전통에서 유래하게 된 것으로서 채권자의 보호가 초점이 되고 있고 배당가능한 소득을 계산하는 데 신중함을 보이고 있다. 거기에서는 이익을 移延시키려고 하고 있으며 충당금의 설정이 상대적으로 많다. 반면 후자는 직접금융시장(자본시장)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본을 조달하여 자금을 마련해 온 배경을 가진 영미식 전통에서 발달되어 온 것으로서 투자자에게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여기에서는 미실현손실은 즉각 반영하나 미실현이익은 보고를 연기하려는 태도가 숨어 있다.

2. 좋은 會計資料를 얻기 위한 條件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가격시그널 등 여러 정보가 필요하고 이러한 경제정보의 큰 부분은 정확한 회계자료로부터 유래한다. 때문에 정확한 회계자료는 진정 필요하다. 정확한 회계자료는 최소한 오류와 부정을 배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오류와 부정을 배제할 수 있으려면 여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우선 해당 기업 내부의 經理部署를 대표로 하는 집행부서들에서 오류와 부정을 피하려는 진지한 노력이 있어야 하고 또 그러한 노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부통제 내지 내부감시제도가 작동하고 있어야 한다. 다음 회계전문가들에 의한 외부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내부통제 및 외부감사의 여건 하에서 이렇게 생산된 회계자료를 올바로 이용하고자 하는 각종 이용자들의 감시 및 분석작업이 따라와야 한다. 더불어 보다 너른 대중이 그것을 알 수 있게끔 공시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망을 지키는지에 대한 관련 감독당국의 적정한 감시 및 감리도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정확한 회계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리부서 등 집행부서에 대해 좋은 회계기준 내지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해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불충분하다.

3. 美國 會計基準의 失敗와 Sarbanes-Oxley 法

이를 볼 때 정확한 회계자료를 보장하는 제도를 장만한다는 것은 의외로 쉽지 않은 과업임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종래 자국의 회계기준인 US GAAP(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Standards)가 유럽에서 國際基準(International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Standards)보다 엄격하고 나은 것이라고 하여 OECD에서 유럽국가 중심으로 국제회계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에 대해 소극적이면서 그 대신으로 자국의 기준을 고집하였다. 후자가 미처 세세한 규칙을 포괄적으로 지니고 있지 못하면서 ‘原則에 根據한 標準(principle-based standards)’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 전자는 ‘規則中心基準(rule-based standards)’으로서 많은 세세한 규칙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중시하였다. 그러나 2001년 말 Enron사건이 터졌고 그로써 미국식 회계가 주어진 회계규칙을 모두 준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실체를 밝히는 데는 실패했다는 점을 수긍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미국의 회계기준도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에 따라 Sarbanes-Oxley Act를 제정하게 되었고 이 법에 의해 회계감사를 하는 사람들을 좀 더 철

저히 규제하고 기업의 대표들에게 회계수치의 정확성을 인증하게 강제하는 등의 변화가 있게 되었다. 특히 금융기관은 자신들이 만든 상품을 소비자들이 이용하게 하는 데 대해 책임을 지도록 요구되었으며 책임을 지는 방법과 정도가 종래 벌금을 무는 등의 사소한 것으로부터 체형을 받는 것을 포괄하게끔 강화되었다. 외부감사인들의 책임이 강조되게 되었으며 감사법인이 컨설팅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이 금지되었다.⁽¹⁾

가장 철저한 회계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던 미국에서의 이러한 변화를 볼 때 어떤 하나의 회계기준을 확정한 후 그것을 틀림없이 적용하는 것만으로써 기업경영에서의 불투명성을 극복하고 경영진의 자의적 판단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잘못임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분명 한계를 가지는 일종의 허망이요 徒勞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설사 완전한 회계기준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독립적으로 자족적 일 수 없고 위에서 언급했듯이 내부통제제도, 외부감사 및 감시제도, 감독기관의 감리 등과 더불어 작동하게끔 되어야 한다. 이로써 이른바 粉飾會計를 지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한 차원 높여 보면 회계자료로서 진실되고 공정한 수치를 제시하려는 데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으며 이를 극복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라는 점을 수긍하지 않을 수 없다. 이하에서는 이를 이른바 ‘公正價值會計(fair-value accounting)’ 가 아직 많은 쟁점들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을 통해 살펴본다.

4. 會計數值의 限界

어떤 확정된 규칙에 의존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의해 생산되는 회계수치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어떤 기업의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입과 지출을 수치로서 진실하게 보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회계행위가 각종 가격이 변화하는 매우 일상적인 상황에서 본질적으로 그 본래의 목적을 이루기 어렵다는 불가피한 특성을 가진다는 점을 상기해 보아야 하겠다. 이러한 점은 수입과 지출, 자산과 부채를 이루는 각종 計定科目과 관련지어 검토될 수 있겠으며 우선 분식회계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

(1) 이러한 법의 통과와 더불어 기업의 실상을 외부에 알리는데 있어 경영자들이 부담하는 책무가 무거워지게 되자 신규공개를 꺼리게 되었고 또 이미 공개된 기업도 주식매수 및 소각을 통해 공개를 지양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즉 완전한 개인기업으로 탈바꿈하여 공개 기업이 지는 투명회계의 요구로부터 벗어나려는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4.1. 粉飾會計

일반적으로 분식회계란 회계기준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회계장부 상의 왜곡 현상을 지칭한다. 그것은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자 하거나 이익 또는 손실을 과다 내지 과소 계상하기 위하여 財務諸表 상의 수치를 진실된 것과 다르게 왜곡시키는, 고의에 의한 회계사기와 과실에 의한 회계처리 오류를 포함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종래 계정과목을 이용하는 粉飾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식이 있다. 흔히 열거되는 분식회계의 예로서는 (1) 재무제표 표시 및 회계처리사항과 관련된 것으로서 가공자산의 계상, 자산평가상 오류, 대주주 등 특수관계자에 대한 잘못된 회계 처리, 관련자산부채간의 상계처리 등이 있고, (2) 주석공시사항과 관련된 것으로서 담보 제공내역의 미기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의 미기재, 자산평가기준의 미기재, 우발상황에 대한 미기재, 회계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미기재 등도 있다.⁽²⁾ 반면 미국에서는 Enron의 파산 후 금융신상품을 이용하는 粉飾의 문제가 크게 부각되게 되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신상품의 거래를 이용하는 粉飾이 없는 바는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이용되는 예로서 현금을 임시 융통하여 놓고 사실 존재하지 않는 자산이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오인시키는 것, 외상매출금의 過多計上(받을 가능성이 없는 외상매출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계상하거나 원천적으로 없는 외상매출금을 있는 것처럼 기재해 놓는 것), 그 실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재고자산의 과다 계상, 존재하고 있는 부채의 은닉 등이 있다. 이러한 계정과목을 이용하는 분식회계는 고전적인 것이고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계정과목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粉飾은 관계자들에게 비밀로 하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이러한 과목을 이용하는 粉飾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계자들의 명시 또는 묵시적인 공모가 이루어져야 한다.

반면 新種金融商品, 특히 그중 새로이 고안된 파생금융상품 등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粉飾은 그 상품의 성격상 실상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또 설사 실상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차후에 나타나 거래의 발생과 그것의 인지 사이에 시간적 격차가 있기 쉽다. 때문에 그런 상품의 거래가 성립하는 시점이나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볼 때에는 실로 粉飾이 자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관계자 대부분은 알기가 어렵다.⁽³⁾

(2) 자세히는 한국공인회계사회(2003).

(3) 미국의 Enron 및 이탈리아의 Parmalat의 사기 및 파산이 있고 나서 이른바 금융공학(financial engineering)을 이용하여 금융신상품을 거래하는 일은 일단 의심의 대상이 되게 되었고 특히 그러한 거래가 역외금융 또는 tax-haven에서 자회사나 페이퍼 컴퍼니를 매개로 사용하면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의심의 정도가 커져 관련회사의 신뢰성과 신용평가는 하락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신종금융상품 관련 粉飾의 잠재성은 상황에 따라서는 더욱 복잡하게 발전하게 되는데 특히 쟁점이 되는 것으로는 스톡 옵션을 비용으로 반영하느냐 여부, 합병이 있을 때 합병되는 회사들의 회계수치를 어떻게 풀링하느냐의 문제, 기업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그런 전망에 대한 근거 일부의 제시와 함께 公表했을 때 그러한 전망치를 발표하는데 관여한 임원들의 책임 문제 등에서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고약한 것은 이러한 신금융상품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粉飾은 CEO나 CFO 등 극소수의 관계자만이 알 수 있을 뿐 기업내에서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조차도 이를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간과하기가 쉽다는 점이다. 과연 미국의 Enron이나 WorldCom에서의 粉飾은 이런 성격의 粉飾이었다고 할 수 있다.

4.2. 公正價值會計

분식회계는 관계자들의 고의 또는 과실을 전제하는 때 성립된다. 그러나 이들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회계수치가 가지는 근본적 한계 때문에 회계수치가 완전한 정보원으로 될 수는 없다는 점도 인지하여야 한다. 어떤 일정 시점에서 회계수치란 어떤 고정된 수치로 굳어져 있어 이를바 歷史的 數值性(historical value)을 갖게 되나 이는 변화하는 상황에서 그에 대응하는 진정한 시그널이 되지 못하는 것이기에 근본적인 한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점을 公正價值會計와 관련시켜 생각해 보려 한다.

당위론으로 보아 회계수치는 진실하고 공정한 가치를 보이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것이 진실하고 공정한 것인가이다. 자산 매입 시의 매입가격이나 부채를 지는 때의 부채액은 매입시점 또는 부채부담의 시점에서는 각각 시비가 있을 수 없는 하나의 수치로 확정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의 역사적 수치는 한번 확정되고 나면 달리 바뀌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물가가 변동하고 이자율과 환율이 수시로 변하는 상황에서는 자산이나 부채의 실질가격은 항시 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변화를 감안할 경우 역사적 가격이 아니라 그것과 대응하는 당시의 시장에서의 거래가격이 진실하고 공정한 가격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할 경우 진실한 수치나 공정한 수치를 어떤 하나로 확정하기가 매우 힘들다.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기동성있게 파악하여 그 實質值를 인식하려고 해야 하지 어떤 시점에서 고정된 하나의 수치에 집착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가변동이나 기술변화의 상황에서는 실질가치를 인식하는 데 근본적 어려움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여 진실성의 추구를 사실상 포기하는 양상으로 되고나면 회사의 대표나 회계담당자는 쉽게 회계수치를 마사지하고 조작할 유인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다른 때보다 커지게 된다. 粉飾의 유혹이 더 커지게 된다. 실제로 이러한 추정의

타당성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은 매우 가변적인 경우에도 이윤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정을 보아서 사후적으로 짐작할 수 있는 바이다.

물가, 이자율, 환율 등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진정한 시장가격 또는 실질가격을 인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회피하려고 하였기에 종래의 회계학에서는 계속성의 원칙을 주장하며 역사적 가격을 선호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적 가격이 가지는 한계성 또한 분명한 것이기에 公正價值會計에 대한 요망 또한 근원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진실되고 공정한 수치란 보통 시장가격을 그대로 반영하는 수치라고 여겨지고 있다. 그런데 시장가격이란 수시로 변하는 것이다. 때문에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수치는 상이한 시점에서의 비교성을 결여하게 되어 나름대로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근본적 어려움 또는 한계성에 관한 논의내용 중 비교적 중요한 것 들에는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있다.

(1) 監查前 數值와 監查後 數值

分期 營業實績을 신속히 발표해야 하는 때 기업들은 감사받지 않은 수치를 우선 발표한다. 그러다 차후 감사를 받고 나면 그것 중 일부가 다소 수정될 수밖에 없어 보통 감사 전 수치와 다른 수치가 감사 후 수치로 공표되게 된다. 이 둘은 각각 당시의 사정으로는 최선의 수치를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 차이가 있기 쉬운데 그럴 경우 그 중 어느 것이 진실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2) 簿外項目

Enron사건에서 同社는 자회사격인 ‘special-purpose entities’를 만든 다음 여기에 자사의 주식을 대여하여 그것을 자회사로 하여금 담보로 삼게 하고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해 사업자금으로 삼게 하였다. 이때 자회사 持分의 큰 부분을 Enron의 간부들이 소유하였었다. 이런 상황에서 자회사의 사업이 성공해 주가가 오르게 되면 그 실익은 자회사 주주인 Enron 간부들에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었다. 반면 사업이 실패해 주가가 떨어진다면 절대규모로 보아서 큰 지분투자를 하지 않은 간부들은 한정된 유한책임만을 지게 될 뿐이고 사업실패에 따르는 실질적 손실은 그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여 은행차입을 가능하게 한 Enron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다. 자회사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이익의 享受나 책임의 부담이 결코 대칭성을 띤다고 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 재벌 내에서의 내부거래의 악용과 다를 바가 없다.

여기에서 Enron사는 주식을 자회사에 대해 대여한 것을 簿外項目으로 기재하였으나 그 실질은 은행에 대한 채무로 보아야 하는 것이었다. 본사와 자회사의 결합 채무제표만 작성되었더라면 자회사의 부채가 사실상 Enron의 부채라는 것은 쉽게 알려질 수 있었을 사

안이었다. 나아가 이때 자금을 대여한 은행들이 대출에 따르는 높은 수익에 현혹되지 않고 정상적 심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예방될 수 있었던 사안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회계제도 하에서도 실상은 그러하지 못했으며, 일류 은행들도 대출심사에懈怠해 자회사의 부채는 오로지 자회사의 부채로 인지되었다. 이러한 예는簿外項目(off-balance sheet vehicles) 중에 큰 부채를 숨기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그래서 FASB(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Board)는 이렇게 부외항목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부외항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가이드라인이 결국은 한정적인 상황을 전제로 하고 나타나는 것일 수밖에 없어 반드시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합당하게 되리라 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3) 스톡 옵션

기업가가 기업가치를 창조했거나 증대시켰다는 주장에 따라 기업가의 공헌에 대한 보상의 방법으로서 스톡 옵션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기업가가 증대시켰다는 기업가치가 많은 경우 거품경제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架空의 가치이거나 투기에 의한 이익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일시적 이익증대에 대해 큰 보상을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가 의문시될 수 있다. 더구나 스톡옵션을 통한 보상은 옵션의 행사 이전까지는 회사의 재정상태를 불확실하게 만드는 것이다. 옵션이 행사될지 여부에 따라 기업의 이익수준이 달라지고 그로써 기업가치도 달라지게 된다. 더욱 고약한 것은 옵션을 부여했는지 여부가 명시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옵션을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좋은지가 쟁점이 된다. FASB는 이것을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1994년 미국 의회가 그것의 비용처리에 대해 반대한 것이 장애요인으로 되어 있다. 나아가 이것을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크기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느냐가 계속 쟁점으로 남아 있다. 실상 스톡 옵션은 그 본래의 취지에서는 경영자나 종업원에 대한 보상을 미래의 주가에 연계시킴으로써 기업의 이익과 이들의 보상이 같이 움직이도록 하여 이들로 하여금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게끔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고자 하여 유래된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의도를 가진 것이 반드시 그 의도대로 쓰이지 않았으면 옵션 부여에 있어 자의성도 상당히介入되게 되었다. 이것은 비용을 줄이는 수단으로 남용되는 일방 옵션 행사 이전에 한시적으로는 이윤을 과다하게 만드는 요소로도 되었다.⁽⁴⁾

(4) 이러한 점 때문에 MS는 스톡 옵션을 비용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하고 Cisco 및 Intel도 이를 뒤따른다고 한다. 이들이 이렇게 변신을 하게 된 이유로는 현재 기술주들의 가격이 과거처럼 상승하는 추세를 가지지 않아 스톡 옵션을 부여하는 것이 더 이상 매력적이 아니라는

(4) 年金 基金

기업이 종업원의 연금부채에 대비하여 구입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보통 시장가격으로 측정되고 있고 영국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기업이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금부채는 어떤 시장가격에 연동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기업이 가지는 연금기금 관련 자산의 실질가치와 연금부채의 그것 사이에 차이가 있기 마련이며 그 차이는 이윤을 표시하는 수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연금기금이 일반 기업의 貸借對照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상기해 볼 때 이렇게 이윤이 물가에 좌우되게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재무제표의 다른 부문 수치의 진실성에 대해서도 당연히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기준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는 전언이다.

(5) 收入 認識의 時期

매출을 하고 그 대가를 받았을 때 수입이 언제 실현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문제거리가 된다. 주문을 받았을 때, 생산을 마치고 배달을 마쳤을 때, 또는 대금을 받았을 때의 각각이 수입인식의 시기로서 一理를 가지는 후보가 되겠기에 논란거리가 된다. 國際會計聯盟(IASB: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Board)에서는 이것에 대한 기준을 2004년에 내놓을 계획이기에 그 이전에는 어떤 확정된 기준도 없다고 하겠다.

(6) 리스

리스해 쓰고 있는 물건을 부채로 計上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리스해 쓰는 물건은 보통 오래 사용하는 것이며 그러한 사용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 물건의 용도가 거의 끝나게 된다. 때문에 리스의 사용료만 비용으로 계상할 것이 아니라 리스한 물건의 가액 전체를 실질적인 부채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할 경우 부채가 늘어나면서 해당 기업의 부채비율도 늘어나게 된다. 이 점과 관련해서 취소하기 어렵거나 취소하지 않을 부담은 부채로 인식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이 있다.

미국식 기준이냐 또는 영국을 대표로 한 대륙 배경의 국제기준이냐 사이의 異見은 規則(rules)이냐 또는 精神(principles)이냐에 요약되어 논의되곤 한다. 미국식 기준에서는 여러 상황에 대해 그러한 때 회계행위를 함에 있어 따라야 하는 규칙이 비교적 세세히

상황변화를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동시에 스톡 옵션이 비용을 과다하게 줄이는 자의적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비난에 대한 반응이기고 하다. 이들은 앞으로 스톡 옵션을 주는 대신 일정한 조건의 충족을 전제로 하여 주식을 직접 주는 방법을 쓰려 하고 있다 한다.

열거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칙을 따르기만 하면 되고 그것에 위배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회계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인정되고 있다. 성문법적 사회제도에 상응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세세한 규칙 이전에 왜 그러한 회계행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신 내지 원칙이 강조되고 있으며 세세한 규칙이 없는 가운데 이러한 정신에 합치하게끔 회계행위를 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불문법 내지 관습법의 사회제도에 상응하는 것이라 하겠다.

종래에는 비교적 세세한 규칙을 가진 미국식 기준이 그러하지 못한 영국식 기준보다 더 엄격히 회계행위를 하도록 기속하는 것으로 인정되었고 그로써 더 우월한 제도라고 이해되기도 하였다. 미국이 EU에서 준비해 온 국제기준에 동의하지 않고 자국의 기준을 고집한 것은 이러한理解와 상응하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Enron사태가 터졌다. 세세한 규칙이 미처 포괄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여러 자의적 회계처리가 자행되었고 그로써 규정되어 있는 어떤 회계규칙도 어기지는 않았으므로 결코 불법이라고 할 수 없으나 진실한 재정상태와 재무상황을 보여 주지는 못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곤란한 상황이 초래되었다. 불완전한 대차대조표를 정당화하는 모순을 露呈하게 되었으며, 부분적으로는 그르다고 할 수 없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잘못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여기에서 미국식 규칙의 강조보다 영국식 정신의 강조가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된 것이다.

최근 이른바 금융혁신을 통해 派生商品(derivatives)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런 파생상품들은 비교적 최근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것들의 회계처리에 대한 규칙은 미처 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상대적으로 세세한 규칙을 가진 미국의 회계 기준도 이러한 최근 발전에 대응하는 회계규칙은 마련해 놓지 못했다. Enron사는 형식적으로 선물매출(forward sale)의 형태를 이용해 그 판매대금은 오늘 받으나 판매한 재화나 서비스는 후일 공급하는 거래를 만들었다. 이런 거래의 실질은 판매대금을 지급한 기업으로부터의 Enron의 차입이라 할 것이며 만약 이 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할 돈을 Enron으로부터의 매입을 근거로 하여 은행으로부터의 차입으로 마련하였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상 은행의 Enron으로의 대출이라고도 해야 할 것이다. 과연 이러한 거래 양상은 선물거래라는 파생상품거래가 사실상 대출이라는 부채를 숨기는 데 악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러한 부채가 대차대조표에 나타날 리가 없음으로써 거래 자체는 물론 그에 영향을 받는 기업의 이익이나 기업가치를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겠다.

실상 파생상품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파생상품을 매개로 한 거래의 실상은 기업의 局外者는 말할 것도 없고 기업 내의 관계자들에게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경

우가 많다고 이해된다.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것의 회계처리에 대한 규칙을 급히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다. 물가가 변화하고 이자율 및 환율이 가변적인 상황에서 시장의 가격을 즉각 인식하고 정리하기 어렵다는 위에서 본 근본적 한계성에 더하여 파생상품에 대한 관련 규칙의 정립이 어렵다는 점까지를 추가해 고려하게 되면 진실하고 공정한 회계를 하는 일은 정말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미국식 규칙을 중시하는 관행을 고집했다가는 불완전한 작업 내지 未完의 작업을 용인하는 것으로 되며, 규칙 대신 근본정신을 강조하고 규칙이 미처 없는 것에 대해서도 그러한 근본정신에 의거하여 회계수치를 정리하도록 하자는 대안이 미흡하나마 수긍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미처 마련되어 있지 않은 규칙을 힘을 모아 제정하여 未完의 상황을 개선해 보려고도 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IASB는 파생상품과 관련해 2005년부터는 그것을 시장가격에 의해 평가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파생상품이란 그것으로 위험을 헤지(hedge)하려는 原商品(original product)과 대응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원상품의 가격도 파생상품의 가격처럼 시장에서 수시로 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논리적으로는 원상품의 가격과 파생상품의 가격이 서로 상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들은 각각 독립된 시장에서 독자적으로 결정된다. 이런 사정 때문에 이 들은 차이를 가지게 되기 쉽다. 이러한 차이는 경우에 따라서는 사소한 것 이상으로 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시장가격에 가장 충실히 보고자 하여 추구하는 공정가격회계가 인위적 평가차를 보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는 분명 해소하기 어려운 난제이다.

나아가 모든 것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려고 한다면 모든 것에 대해 경쟁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어떤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수요나 공급이 지극히 한정되어 있어 경쟁시장의 성립을 인정하기조차 어렵다. 여기에서 설사 公正價值會計를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된다. 그로써 그렇게 마련된 수치라고 하여 모두 신뢰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근년 많이 나타난 닷컴(dot.com)기업도 회계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닷컴기업에서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顧客名單(subscriber list), 종업원의 능력 등이다. 그런데 소프트웨어에는 이미 개발되어 실질적으로 가치를 가지는 것도 있으나 아직 개발 중인 것도 있다. 고객은 언제 이탈해 갈지 모르기 때문에 고객명단의 자산성 또한 불안한 것이다. 종업원도 언제든지 이직해 경쟁회사로 가거나 새 회사를 차릴지 모르기 때문에 자산으로 볼 수도 있으나 부채로 될 수도 있다. 닷컴기업의 자산이란 이처

럼 그 가치를 확신하기 어려운 것으로 그 자산성이 매우 취약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업들이 장래 큰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여 적어도 거품이 꺼지기 이전에는 당장의 손실발생에도 불구하고 미래가치를 운운해 왔다. 이에 대응하여 이들의 기업가치는 시장에서의 거품 낸 주가와 상응하게 높게 평가되기도 했었다. 그러다가 이런 주가는 거품이 꺼지면서 크게 하락하게 되었고 이들 기업가치도 상응하여 낮게 평가되게 되었다. 생각해 보면 과생상품을 이용하여 가공의 이익을 조작한 뒤 실상 이상으로 기업 가치가 보이게끔 粉飾한 경우 이를 행한 기업들은 그래도 수치상으로는 이익을 보이고 있었고 나름대로의 자산도 가지고 있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닷컴기업들은 그러하지도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높은 평가를 시장에서는 받았었다. 그러니 이를 보면 단기적인 시장에서의 실적치를 무조건 신뢰하기란 어려운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이 또한 公正價值會計가 지향하는 과제의 어려움을 다시 확인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장기적으로는 公正價值會計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회계수치를 정리할 수 있게 되어야 하겠다. 그러나 그런 목표점에 도달하기까지의 이행기간 중에는 상당한 정도 자의성의 발휘 및 그에 따르는 불안이 불가피하며 그로써 회계수치란 불완전한 것으로 될 수밖에 없다.

결국 회계수치는 매우 가변적이고 보다 복잡한 내용을 가지는 것이고 또 상당한 정도 주관적 요소를 지닌다는 사정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아마도 貸借對照表나 損益計算書의 수치를 하나의 확정된 수치로 발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 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 점이 못마땅하다면 그 대신 여타 가정을 밝히고 그에 따라 만들어진 여러 추계치를 매트릭스 형태로 제출해 놓고 그곳에서의 다양한 정보를 이용자가 각자의 이용목적에 맞게 소화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정직한 대응이 될지도 모른다 할 수 있겠다.

5. 限界의 認定과 不完全한 資料의 活用

회계수치가 이렇게 불완전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情報源으로서 그것이 가지는 신뢰성은 그만큼 한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것은 경제현상을 보여주는 여러 수단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으며, 다른 통계수치 등과 더불어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회계수치도 일종의 推計值(estimates)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관성을 배제 할 수 없고 조작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솔직히 인정해야 하겠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러한 자료의 생산을 단지 과거의 사실에 대한 자료에 한정하지

말고 그 이상 미래에 대한 전망 내지 예측치를 포함하게끔 자료 마련의 外延을 확장하는 것도 생각하게 된다. 경제전망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응하여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고 그러한 사태 중 최악의 경우는 어떠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통계치를 발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과 대응시켜 상응하는 회계수치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포함하게 할 수도 있겠다. 또 어떠한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질 때의 최대 위험성을 보여주는 금융기관들 공표의 VAR(value-at-risk)처럼 극단적 상황에 대한 회계수치를 제시하게 할 수도 있겠다.

같은 맥락에서 정보에 대한 욕구를 더 이상 확장해 볼 수도 있다. 단지 회계자료를 통해서 財政狀態와 損益構造를 아는데 그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해당 기업 경영진의 과거 성공과 실패의 실적을 포함한 경영진에 대한 평가, 지배주주들의 지분구조 및 그런 지분의 소유기간, 고용인력의 구조 등까지도 기술하게끔 정보원의 범위를 확장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종국적으로 회계자료란 기업의 실상을 외부에 충실히 보여주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기업의 透明性을 요구하고 기업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회계수치 이상 다양한 관련 자료를 그들 각각이 가지는 한계성과 함께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당연한 사정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회계수치를 포함해 이런 목적에 대응하려 할 때 제시할 수 있는 수치는 본질적으로 완벽할 수 없고 나름대로의 한계를 가지는 것임을 알았다. 이에 그 한계가 작은 것은 보다 높은 신뢰성을 지닌 것으로서 발표하게 하고 그 정확성이 다소 의심스러우나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추계 가능한 信賴區間을 가지고 발표하게 하며, 이러한 여러 가지를 기업의 실상을 알고자 하면서 나름대로의 이용목적을 가지고 있는 여러 관계자들로 하여금 각각의 이용목적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정직한 대응이 되리라 할 수 있겠다.

예컨대 금융기관들은 이자율과 환율의 可變性에 영향을 받는 자산과 부채를 다른 업종에 속한 기업들에 비해 많이 지니고 있다. 따라서 위의 논의에 의거하여 추론해 볼 때 금융업에서의 회계수치의 불확실성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⁵⁾ 기술 변화가 심한 하이테크 업종도 위험성이 커서 그 업종에 속하는 기업의 회계자료의 가변성도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 논리로 자기자본 및 자가 보유 자산

(5) 금융기관에서 생산해 발표하는 수치는 매우 정확하리라는 인상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시각을 가지고 보면 금융기관 관련 수치는 역사적 가격으로는 정확할 수 있겠으나 실질가치로는 전혀 그러하지 못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이 상대적으로 작으면서 또 경기변동에도 영향을 많이 받는 건설업의 회계자료도 상대적으로 큰 신뢰구간을 가져야 마땅하다고 할 수 있다.

Enron사건 이후 회계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시비가 비등해지면서 나타난 특기할 현상은 회계監查人에 대한 불평이 증가하게 되었다는 것과 이들의 성실의무불이행에 대한 소추 내지 책임추궁이 증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극단의 예로 2002년에는 5대 회계기업의 하나이었던 Arthur Anderson이 퇴출하게 되는 사태까지 나타났다. 또 보험회사들은 회계사들의 責任保險料(liability insurance premium)를 대폭 인상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회계감사인들은 일차적으로는 감사보수를 인상하는 것으로 대응하였다. 그에 이어 위험성이 큰 금융업, 건설업, 하이테크업 등에 속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아무리 높은 감사보수를 준다고 하더라도 감사를 거절하는 사태도 나타났다. 다른 한편 어려운 사태 발생시 감사인들이 겪게 될 부담을 줄여 보려는 노력도 나타나게 되었는데 감사인들로 하여금 주식회사를 만드는 등의 수단으로 책임을 폴링(pooling)하게 함으로써 개별 감사인이 지는 부담을 한정시키도록 하거나 영국에서처럼 감사인의 책임의 상한을 설정하여 그러한 상한 이상 무한으로 책임이 확대되는 것을 막아보려고도 하고 있는 것 등이 그런 예이다.⁽⁶⁾

회계자료의 質的充實化는 그것을 직접 생산하는 집행부서나 외부감사인의 노력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회계정보를 시초에 생산하는 생산자의 교육 및 책임의식이 강조되어야 하겠다. 이에 따라 개별기업의 회계담당자는 물론 CEO나 CFO 등에게 책임을 주지시키는 일이 빈번해졌으며 또 내부통제시스템을 보다 철저하게 할 것도 재삼 강조되게 되었다.

진실되고 공정한 가격에 근거한 훌륭한 회계제도라도 그것은 기업의 실상을 기업의 외부에 충실히 알리는 수단의 하나에 불과하다. 회계제도의 구체적 운영이 주관적 요소를 배제할 수 없다 함을 상기하면 투명한 회계제도란 투명한 企業支配構造를 이루기 위한 수단의 하나에 불과하며 때문에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다른 요소들과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되어야 그 본래의 목적을 다할 수 있게 되리라 할 수 있다. 좋은 회계제도만 있다면 회계부정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이 단면 역시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회계제도 이외의 다른 요소들이 모두 제 기능을 다하며 작동하고 있을 때에서야 타당하고 또 효과적이 되리라 할 수 있겠다. 국제적 회계기준을 도입하고 우리의 회계기준을 이것에 맞추는 것은 이러한 근본적

(6) 영국에서는 이러한 책임의 상한으로서 감사보수 및 기타보수의 합의 10배 정도를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도라면 부실한 감사에 대한 충분한 억제책 또는 응징이 되리라 보고 있다.

과제를 풀기 위하여 필요한 한 가지 요건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되 결코 충분조건으로 되지 못한다 하겠다.

6. 餘 言

우리는 이상의 논의를 통해 公正價值會計가 지향하는 이상을 실재화시키는 것이 적어도 단기간 내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 훌륭한 회계제도도 회계제도 독자적으로는 존립할 수 없고 훌륭한 기업지배구조를 가져오는 다른 요소들과 함께 병립하게 될 때 얻어지고 그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저간의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1997년 IMF사태 이후 국제회계기준에 맞는 회계기준을 마련하려는 데 매달려 왔다 할 수 있다. 2002년 이후의 변화, 특히 논란의 여지없이 누구에게나 자명한 회계수치란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한계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주목하지 않은 채, 그 이전에 결정했던 바 국제기준을 차용해 우리 기준을 보강한다는 과업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경직성을 보여 왔다. 현상적으로는 회계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국제기준에 접근하되 우리의 독자성도 다소 반영한다는 원칙 하에서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우리의 기준을 만드는데 열성을 바쳐 왔다.⁽⁷⁾ 그 이면에서 그것이 추구하는 바가 어차피 달성 불가능한 과업이니 그것에만 매달리지 말고 '會計資料를 通한 透明性 確保'에 너무 집착하지 말며 최선의 진실파악을 위해 여러 자료를 회계자료와 함께 활용해야 하되, 관계전문가의 주관적 판단에도 상당한 정도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당연한 사정은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외면당해 왔다고 여겨진다.

그리하여 명분으로는 公正價值會計 보다는 어정쩡한 국제기준에 합치하는 회계기준 또는 그러하면서 동시에 우리 문화를 반영하는 회계기준을 정립하는 것에 목표를 걸고 있으면서 현재 그러한 것은 마련하는 중이라고 자위하며 시간을 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과제를 완성해야 하는 시간이 아직은 도래하지 않았으니 아직은 거창한 명분을 계속 이야기할 수 있고 현재의 표류상황도 변명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

IMF사태를 야기하게 된 것의 주요 원인이 재벌에 있다고 보아 재벌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른바 기업지배구조를 개혁하고자 하여 여러 조치를 도입하였다. 주주제

(7) 우리의 독자성을 반영한 기준이 국제기준과 차이를 가질 때 나타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전자에 대응하는 로컬 모델과 후자에 대응하는 글로벌 모델을 차별화한 다음 이 둘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할 경우 대기업에 대해서는 글로벌 모델이 적용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로컬 모델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짐작하기도 한다.

안제도, 집중투표제도, 사외이사제도, 감사위원회제도를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에 대해서는 少數株主權을 강화하거나 M&A를 보다 용이하게 하였으며 시장규율이 보다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꾀했다. 이러한 것과 보조를 맞추어 회계제도 개혁의 측면에서도 그것을 국제기준에 맞는 것으로 개혁하고자 했다. 그 일환으로 30대 그룹에 대해서는 結合財務諸表의 작성을 의무화했다. 더불어 내부통제 강화의 측면에서 2001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인 기업과 여신규모 500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내부관리제도의 구축을 의무화하면서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도 도입했다. 아울러 분기보고서제도의 도입, 예측정보공시 등을 통해 기업공시내용을 확대했으며, 불공정거래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강제조사제도 및 공시부정기업에 대한 과징금부과제도를 도입하여 벌칙을 강화했다. 이러한 제도개혁이 그런 것들이 본래 의도하는 바대로 집행될 수 있다면 투명한 회계제도나 투명한 기업지배구조의 달성을에는 큰 진전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개혁에 대해서 그것이 과도하거나 기왕의 규제의 중복이라는 비난내지 불평이 없지 않다. 개혁안의 핵심사안으로 공시서류의 허위표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보고서 등에 대해 CEO 및 CFO의 인증 내지 서약을 의무화하는 것은 중복규제라는 것이 그 하나인데, 기왕에도 공개기업의 경우 사업보고서, 유가증권신고서 등에는 대표이사가 날인을 하고 허위임을 알면서 날인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으며, 회계감사 준칙상 경영자가 책임을 인정하는 ‘經營者 確認書’를 대표이사 및 회계담당 임원이 작성한 뒤 서명하여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다는 점 등을 그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분기마다 기별 재무제표, 4월에 연결재무제표, 6월말에 결합재무제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분반기별 재무제표를 모두 연결재무제표로 작성한 뒤 공시하도록 하는 것도, 전산시스템이 미비되어 있고 자회사의 결산지연 등으로 취합이 어려운 현실에서 보아 회계현실을 모르는 이상론 추구라고 비판한다. 결산인프라가 정비되기까지는 제출시간의 단축을 유예하고 연결재무제표를 주 지표로 채택할 경우에는 개별 및 결합재무제표의 제출의무는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하고 있다(양세영(2002)).

상당 기간 불완전한 회계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상기해 볼 때 회계제도 전체 체계의 일부에 해당하는 몇 가지를 골라 그런 것들을 강제한다는 것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겠는지는 곰곰이 읊미해 보아야 할 사안이다. 우리의 현황이 重複規制의 의미까지 가지는 틀을 가지는 것인지 그런 사정이라면 명분과 실질의 차별된 인식과 시행에 익숙한 우리사회가 과연 그러한 여러 조치가 지향하고 있는 바를 진정으로 이

루어 내려고 할 것인지는 여러 시각에서 검토해 보아야 할 사안이다. 아마도 우리는 회계제도 면에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이상적인 회계제도를 마련해 정착시킬 수 있다는 가능에 싸여 있으면서 기왕의 불완전한 제도 중 상대적으로 중요한 것만이라도 철저히 집행해야 하겠다는 결심은 했으나 그렇게 중요한 것들을 어떻게 선정했는지에 대한 전체적 시각은 결여한 채 별로 큰 의미 없는 일에 매달리고 있으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 취지가 좋다고 하여 외국의 좋은 제도를 모두 도입한다거나 현실과 유리된 규제를 중복 부과한다고 해서 회계투명성이 일거에 달성되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 어차피 기왕의 불완전한 제도를 완벽하게 만들어 집행하는 것이 어렵다면, 기왕의 제도 그 자체를 경직적으로 고수하는 것은 별 가치를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완벽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는데 연연하기보다는 기왕 제도의 작은 문제점 중 보완의 여지가 큰 것을 중점적으로 보완하면서 그 집행을 내실 있게 하는 것이 더 요망된다 할 수도 있겠다.

우리의 실체는 불가능한 목표를 내걸고 현재 완성하기 어려운 큰 그림을 고대하면서 당황하며 단기간 시간을 벌고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으나, 명분과 다른 실체를 별 불편 없이 능숙히 지니기도 한다는 우리의 정체성을 상기해 볼 때 끝에 가서는 큰 그림을 완성하려는 꿈을 접고 그 시점에서 가능한 몇 가지 정도를 사실상 결정해 새로운 제도로 삼으려고 하는 타협안을 가지고 끝날 가능성이 크다. 불완전하나 동시에 그렇게 되는 것이 불가피한 어떤 회계제도를 공식화하게 될 것이요, 그것에 대응하게끔 기왕의 内部統制制度 및 外部監査制度도 다소 변용시켜 집행해 가게 될 것이다. 또 차후 찾아져 전개될 우리식의 기업지배구조에 대응하는 우리의 로컬 모델을 탐색해 그것을 이용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로컬 모델이 쉽게 정리되고 어떤 하나로 합의되기는 쉽지 않을 여지도 매우 크기 때문에, 곁으로는 국제기준을 계속 주창하면서 표류를 계속하는 실상을 상당한 시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더욱 크다. 결정하기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어떤 斷案을 내리지 못한 채 미정의 상태에서 겪여나가는 현재의 실체를 상당한 시간 지속하게 될 소지가 크다.

서울大學校 經濟學部 教授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

전화: (02)880-6391

팩스: (02)886-4231

E-mail: chonpyo@plaza.snu.ac.kr

參 考 文 獻

양세영(2002): “회계제도 개혁안의 문제점과 과제,” 『전경련』, 12월.

한국공인회계사회(2003): “현행 공시사항의 개선방안-회계투명성의 관점에서,” 『공인회계사』, 3월.

The Economist(2003): “Accounting standards: Common ground,” December 20th.